

협정관세 적용신청서 (갑지)

(5쪽 중 제1쪽)

접수일자	처리기간	즉시
------	------	----

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 제8조·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합니다.

○○ 세관장 귀하

협정관세 적용신청서 (을지)

(5쪽 중 제2쪽)

5.란 번호			
6.품명·모델·규격			
7.신청일			
8.원산지증빙서류 종류	원산지증명서 [] 사전심사서 [] 동종동질물품 []	원산지증명서 [] 사전심사서 [] 동종동질물품 []	원산지증명서 [] 사전심사서 [] 동종동질물품 []
9.원산지증명서 발급·작성주체	기 관 [] 자율(수출자) [] 자율(생산자) [] 자율(수입자) []	기 관 [] 자율(수출자) [] 자율(생산자) [] 자율(수입자) []	기 관 [] 자율(수출자) [] 자율(생산자) [] 자율(수입자) []
10.원산지			
11.기관명			
기관종류	국가기관 [] 상공회의소 [] 비국가기관(기타) []	국가기관 [] 상공회의소 [] 비국가기관(기타) []	국가기관 [] 상공회의소 [] 비국가기관(기타) []
12.발급·작성번호			
13.발급·작성일			
14.총순중량			
15.적출국			
16.적출항			
17.출항일			
18.환적국			
19.환적항			
20.환적일			
21.연결원산지증명서발급국가			
22.제3국 송품장 발급국가			
23.원산지 인증수출자 번호			
24.협정적용 순중량			
25.분할차수			
26.품목번호(HS No.)			
27.협정관세율(관세율구분부호)			
28.원산지결정기준	완전생산기준 [] 세번변경기준 [] 부가가치기준 [] 결 합 기 준 [] 특정공정기준 [] 역외가공기준 [] 기타원산지기준 [] 자 율 발 급 []	완전생산기준 [] 세번변경기준 [] 부가가치기준 [] 결 합 기 준 [] 특정공정기준 [] 역외가공기준 [] 기타원산지기준 [] 자 율 발 급 []	완전생산기준 [] 세번변경기준 [] 부가가치기준 [] 결 합 기 준 [] 특정공정기준 [] 역외가공기준 [] 기타원산지기준 [] 자 율 발 급 []

작성 방법		
항 목	작성 내용	작성례
1. 신고번호	○ 수입신고서의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.	41234-56-7890123-
2. 수입자 - 상호 - 성명 - 주소 - 전화번호 - 팩스번호 - 전자우편주소 - 사업자등록번호 - 통관고유부호	○ 원산지증명서 수입자 관련사항을 기재합니다. - '상호' 는 반드시 원산지증명서 수입자의 상호를 기재합니다. - 그 외의 항목은 물품양수도 등의 이유로 수입신고인이 원산지증명서 '수입자' 의 관련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'납세의무자' 의 해당 항목을 기재합니다.	- ○○통상(주) - 홍○○ - △△도 □□시 ○○구 ○○로 123 - 02-1234-5678 - 02-2345-6789 - ○○○@abcd.com - 123-45-6789 - ○○통상1234567
3. 수출자 - 상호 - 국가 - 성명 - 주소 - 전화번호 - 팩스번호	○ 체결상대국의 수출자 관련사항을 기재합니다. - 원산지증명서상의 회사명을 기재합니다. -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가 소재하는 국가명을 기재합니다. (통계부호표 국가명 참조) - 원산지증명서상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. - 원산지증명서상의 주소지를 기재합니다. -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. -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팩스번호를 기재합니다. (수입자가 아는 경우에 한합니다.)	- ○○○○ Corporation - 칠레의 경우 : CL - 미국의 경우 : US - Jhon △△ - 12 ○○○○ Road #10 □□□□ Singapore - 68-1234-5678 - 68-1234-5679 * (국가코드)-(지역번호)-(전화번호) 순으로 기재
4. 생산자 - 상호 - 성명 - 주소 - 전화번호 - 팩스번호	○ 체결상대국의 생산자 관련사항을 기재합니다. - 회사명을 기재합니다. -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. - 회사의 주소지를 기재합니다. -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. -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팩스번호를 기재합니다. * 생산자관련 정보는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로서 원산지 증명서상에 생산자가 기재되어있거나 수입자가 알고 있을 때에만 기재합니다.	- □□□□ Corporation - Al △△ - 123 ○○○○ Road #12-34 □□□□ Singapore - 68-1234-9876 - 68-1234-9875 * (국가코드)-(지역번호)-(전화번호) 순으로 기재
5. 란 번호	○ 협정관세 적용 신청 물품의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. - 적용 신청 물품이 다수일 경우 읊지에 기재합니다.	- 001, 002, 003, ..., 999
6. 품명·모델·규격	○ 협정관세 신청 물품의 품명·모델·규격을 기재합니다.	- strength mount / ○○○mount / 12*34*56(mm)
7. 신청일	○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을 기재합니다.	- 2016/07/01
8. 원산지증명서류 종류	○ 원산지물품 확인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해당 근거자료에 "√"를 기재합니다.	-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고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[√] 사전심사서 [] 동충동질물품 []
9. 원산지증명서 발급·작성주체	○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·작성주체에 "√"를 기재합니다.	- 싱가포르 세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기 관 [√] 자율(수출자) [] 자율(생산자) [] 자율(수입자) [] - 한-미 FTA 수출자가 자율 작성한 경우 기 관 [] 자율(수출자) [√] 자율(생산자) [] 자율(수입자) []
10. 원산지	○ 원산지증명서류상의 원산지(국가부호)를 기재합니다. - 원산지: FTA 원산지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원산지 * 한-EU FTA 적용물품으로 원산지가 EU 당사국내 어느 한 국가가 아닌 경우 'EU' 로 기재 가능합니다.	- 원산지가 싱가포르인 경우: SG - 원산지가 미국인 경우: US * 국가부호: 국가별 ISO코드 (무역통계부호표 참조, '이하 동일')

11.기관명 및 종류	○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명을 기재합니다. ○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종류에 "√"를 기재합니다. * 9번 항목이 "기관"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.	- 싱가포르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기관명 Singapore Customs - 기관종류 국가기관 [√] - 상공회의소 [] - 비국가기관(기타) []
12.발급 · 작성번호	○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· 작성번호를 기재합니다. * 다만, 사전심사서의 경우 승인번호를 기재합니다. * 동종동질물품의 경우 해당 품목번호(HS No.)를 기재합니다. * 띄어 쓰지 않고 대문자로 기재합니다. * 특수문자(' ' , '/' 등)는 생략합니다. * 발급번호가 중복되는 경우 뒤쪽에 발급일을 기재합니다. * 같은 날짜에 발급번호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뒤쪽에 일련 번호를 기재합니다.	- 자율발급인 경우 해당서류 번호를 기재 - 해당서류번호가 없을 경우 송품장 번호를 기재 - VN-KR/02 71인 경우: 'VNKR0271' 'VNKR0271(20160701)' 'VNKR0271(2016070102)'
13.발급 · 작성일	○ 원산지증명서상의 발급일 또는 작성일을 기재합니다. - 기관발급의 경우 : 발급일을 기재합니다. - 자율증명의 경우 : 서명일을 기재합니다. * 다만 사전심사서의 경우 승인일을 기재합니다. * 동종동질물품의 경우 생략합니다.	- 발급일이 2016.7.1인 경우: 2016/07/01
14.총순중량	○ 원산지증명서상의 총순중량을 기재합니다.	- 100kg
15.적출국	○ 선하증권(B/L)상의 선적국을 기재합니다. - 선적국의 국가부호를 기재합니다.	- 선적국이 미국인 경우: US
16.적출항	○ B/L상의 선적항을 기재합니다.	- 적출항이 싱가포르 항구인 경우: Singapore
17.출항일	○ B/L상의 B/L 발행일을 기재합니다.	- B/L상의 발행일(Date of issue of B/L)이 2016.7.1인 경우: 2016/07/01
18.환적국	○ 최초 선적지 발행 B/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를 통하여 확인된 환적국을 기재합니다.	- 싱가포르에서 출발하여 일본에서 환적한 경우: JP
19.환적항	○ 최초 선적지 발행 B/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를 통하여 확인된 환적항을 기재합니다.	- 환적항이 요코하마 항구인 경우: Yokohama
20.환적일	○ 최초 선적지 발행 B/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를 통하여 확인된 환적일을 기재합니다.	- 환적일이 2016.7.1인 경우: 2016/07/01
21.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국가	○ 한-아세안 FTA의 규정에 따라 생산국의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다른 계약상대국이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, 최초로 발급한 국가의 국가부호를 기재합니다.	- 베트남 원산지물품을 싱가포르에서 다시 수출하며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: 'VN'
22.제3국 송품장 발급국가	○ 제3국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발급된 국가의 국가부호를 기재합니다.	- 일본에서 제3국 송품장이 발행된 경우: 'JP'
23.원산지인증 수출자번호	○ 수출자가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 * 특수문자('/' , ' ' 등)는 생략합니다. * 공란은 제거합니다.(붙여서 기재)	- IT-001-○○123인 경우: 'IT001○○123'
24.협정적용 순중량	○ 수입신고 물품 중 협정관세적용신청 물품의 순중량을 기재합니다. - 원산지증명서를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분할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순중량을 기재합니다.	- 원산지증명서상의 유효유1,000kg 중 500kg에 대해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 하는 경우: 500kg
25.분할차수	○ 원산지증명서의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분할차수를 기재합니다.	- 2회차 분할신고시: 2
26.품목번호 (HS No.)	○ 원산지증명서상의 품목번호 6단위를 기재합니다. * 수입신고서의 품목번호와 원산지증명서상의 품목번호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. *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상 품목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수입신고서상의 품목번호를 기재합니다.	- 원산지증명서상 품목번호 6단위: 2710.19
27.협정관세율 (관세율구분부호)	○ 협정관세율(관세율구분부호)을 기재합니다. - 적용받고자 하는 협정관세율과 해당 관세율구분부호를 기재합니다.	- 한-싱 자유무역협정세율이 0%인 항공기용 기관오일(2710.19-7110)를 수입한 경우: 0.0(FSG)

28. 원산지결정기준	○ 해당 원산지물품의 결정기준에 "√"를 기재합니다. *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이 등 두가지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결합기준에 "√"를 기재합니다. * 자율발급 원산지증명 물품으로 원산지기준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자율발급에 "√"를 기재합니다.	완전생산기준 [] 세번변경기준 [] 부가가치기준 [] 결 합 기 준 [√] 특정공정기준 [] 역외가공기준 [] 기타원산지기준 [] 자 율 발 급 []
-------------	---	--